

IFRS in Focus

IASB, IFRS 연차개선(2009-2011 cycle) 발표

목차

- 도입
- 개정사항

요점

- 이번 개정은 다음의 기준서에 영향을 미친다.
 - IFRS 1 'IFRS 최초채택'
 - IAS 1 '재무제표 표시'
 - IAS 16 '유형자산'
 - IAS 32 '금융상품: 표시'
 - IAS 34 '중간재무보고'
- 이번 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도입

2012년 5월 12일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IFRS 연차개선(2009-2011 cycle)'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는 IFRS 개정을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IFRS 연차개선과정에 따라 발표된 4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은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은 IFRS 연차개선(2009-2011 cycle) 내의 개별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고 다른 모든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개정사항

기준서	주제	개정내용
IFRS 1 'IFRS 최초채택'	IFRS 1의 반복 적용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제표가 IFRS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이 없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IFRS 1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IFRS 1을 적용할 수 있다. IFRS 1을 반복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마치 IFRS 적용을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소급적으로 IFRS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a) IFRS 적용을 중단한 이유 b) IFRS 적용을 재개한 이유 c) 가능한 경우, IFRS 1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
	차입원가	IFRS 전환일 전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과거에 자본화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IFRS 전환일의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IFRS 전환일에 건설중인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IFRS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IAS 23 '차입원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IFRS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 이전에도 IAS 23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비교정보에 관한 공시규정의 명확화	IAS 1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비교재무제표를 초과하는 기간의 비교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만약 비교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IAS 1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비교재무제표를 초과하여 포함되는 추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비교정보의 공시를 포함하여 관련 IFRS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완전한 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회계정책을 소급적으로 변경하기로 선택하거나 전기초 재무상태표상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를 수행한 기업은 당기말 재무상태표, 전기말 재무상태표 및 전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일부 특정 정보의 공시를 제외하고는 전기초 개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주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IFRS 최초채택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는 IFRS로의 전환효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비교정보가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IAS 16 '유형자산'	수선용구(servicing equipment)의 분류	교환부품, 예비용구, 수선용구는 IAS 16의 유형자산 정의를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IAS 32 '금융상품: 표시'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IAS 12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IAS 34 '중간재무보고'	중간재무정보와 총자산 및 총부채에 대한 부문정보	특정 보고부문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해당 금액이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고 해당 보고부문과 관련하여 최종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보다 중요하게 변동되는 경우에만 중간재무보고에서 별도로 공시된다.

논평

이번에 실시된 기준서 개정의 대부분은 기준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기준서 간의 의도하지 않은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IAS 1 개정으로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재무상태표를 추가 표시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추가된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주식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정책의 변경, 재분류 또는 재작성이 수행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시가 요구되는 과거 보고기간으로부터의 정보량을 감소시키도록 한 것은 흥미로운 사항이다.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및 Deloitte member firms는 본 출판물에 근거한 결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